

“SpeakUp” 지침

버전: 2021 년 1 월

목 록

1	지도원칙	3
2	범위와 목적	3
3	부당행위 발견 혹은 합리적인 의심	3
4	고의적 허의제보	4
5	직책분배	4
6	제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음	5
7	보고	5
8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5
9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권리	6
10	데이터보호	6
11	연락처	7
12	통보 프로세스 안내도	8

주석 :

이해하기 쉽게 남성,여성, 기타 명칭의 언어형식을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 공평하게 모든 명칭은 모든 성별을 대표한다. 줄임말의 형식은 편집에만 쓰이며, 그 어떤 평가적인 의미는 없다.

“SpeakUp” 지침

발효일자 : 2021 년 1 월 1 일

1 지도원칙

지속가능경영은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INDUS(그룹 모기업)의 종업원 매 사람과,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미래의 비전을 확립한다.

INDUS 문화의 초석에는 전반적인 수요의 구분과 각 자회사의 독립적인 운영 및 관리,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관과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합의가 있다...

“SpeakUp” 제보자 제도는 명확한 제보 구조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과정(escalation process)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신뢰와 보안 환경을 창조하였으며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고 손실을 피할수 있게 한다.

2 범위와 목적

- 2.1 본 “SpeakUp” 지침에서는 입증된 봐와 같이 잘못이나 혹은 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2.2 본 지침은 모든 종업원(임시직 포함), 거래선, 공급사 및 회사와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에 적용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발견과 합리적인 의심

- 3.1 우리는 그 어떤 중대한 잘못된 행위/부당행위(위법 또는 우리 행동의 준칙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에게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 3.2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규정된 신고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신고할것을 권장합니다. 기중 포함(예)
 - 내부의 믿을수 있는 사람.
 - 인력자원부서
 - 기업노조
 - 경영진
 - 내부건의 및 신고부서
 - 합규 부서
- 3.3 이러한 제보채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보시스템인 “SpeakUp”을 제보채널로 사용할수 있다. 독립된 제 3 자가 “SpeakUp”을 운영한다.
- 3.4 “SpeakUp”을 통해 직접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에게 제보할수 있다.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으며, 단, 제보자는 제보를 제출할때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고의적인 허의제보

고의적인 허의제보는 행위준칙을 위반한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는 규율처분과 혹은 기소를 초래할수 있다.

5 직책분배

5.1 필요한 경우 “SpeakUp”를 통해 모국어로 제출한 제보를 번역하여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에게 전달한다.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이 부재일 경우 법률부서가 대표해서 제보된 사항을 감독한다.

5.2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은 과실혐의행위 혹은 사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후 사건 사실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SpeakUp”을 통해 제보자와 익명으로 소통 할수 있다. 익명인 경우 에는 제보자와 소통할수 있으며 사건 사실에 대해 추가평가를 할수 있다.

5.3 예비 심사를 근거로 사건 사실처리에 관한 추가방안을 확정한다.

신고의 심각성이나 관련 집단 및 법률 분야에 따라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은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해당 투자회사나 투자그룹의 주관부서 (흔히 INDUS 직접투자회사의 경영진 또는 투자그룹의 준법감시원)에게 신고를 전달한다.

변호사와 같은 외부전문가를 요청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범죄가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은 모든 제보안건을 수사하고 상세한 기록을 확보한다.

5.4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제보는 전체 이사들과 감사부서가 안건사실의 심각성과 혹은 당사자 상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사회 회장에 대한 제보는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전체 이사회에 관한 제보도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5.5 회사는 각급 관리자와 간부가 이러한 신고에 성실히 응대하며, 비밀을 엄히 유지하고 각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부당 행위를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6 제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음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은 더 이상 그 제보안건에 대하여 추적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만약,

-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

제보가 허위 제보로 판정됐을 경우.

7 보고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다시 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원이 직접 보고할수도 있다.

제 5.3 항의 규정에 따라, INDUS Holding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상세한 보고서를 INDUS 조직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각 투자회사 혹은 투자그룹의 준법감시원에게 보고한다, 안건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때:

- 안건별(해당 법률분야 / 해당 행위준칙);
- 조사상황 (진행중 / 완료);
- 조사결과와 결론.

8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

8.1 모든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로 한다. “SpeakUp”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음성메시지, IP 주소와 / 혹은 전화번호등을 발설하지 않는다. 제 8.3 항 제외.

8.2 어떤 제보자도 이로 인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보자 (보고인으로서)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호권을 가질수 없다.

- 8.3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보자의 보호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 법 집행 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성 메시지, IP 주소와/혹은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투자 회사나 INDUS Holding 주식회사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 고의적인 허의 제보 또는 본심에 어긋나는/혹은 악의적인 제보임이 판명됐을 경우 (“악의적으로”);
 - 혹은 제보 자체가 형사범죄이거나 또는 행위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예를 들어 비방 혹은 협박)
- 8.4 제보자는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SpeakUp”를 통하거나 혹은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에게 직접 제보할 수도 있다.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9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권리

- 9.1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회사는 늦어도 30 일 이내에 관련자들에게 통보한다. 구체적인 안건의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수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방해가 있을 경우 통보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9.2 관련자들은 자신을 상대로 한 조사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로 인해, 관련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다.
- 상사 혹은 사장,
 - INDUS Holding 주식회사 준법감시원

10 데이터 보호

- 10.1 회사와 지정된 직원은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법률안에서 제보자와 관련자들을 보호하는 데이터를 확보한다. 제한된 기초한에서만 정보내용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이른바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는 원칙 (Need-to-Know-Basis)”) 를 제공할 수 있다. “SpeakUp”를 사용하면 관련 직원들과 “SpeakUp”이 채택한 번역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런 프로세스 역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는 원칙”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반드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10.2 “SpeakUp” 지침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조항에 근거하여 이상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11 **연락처**

M. BRAUN INERTGAS-SYSTEMS KOREA LTD.

B-1004, Gangseo Hangang Xi (zhai) Tower, 401
Yangcheon-ro, Gangseo-gu, Seoul, 07528, Korea
Phone: +82 2 3275 3537
Internet: www.mbraun-glovebox.kr

M. BRAUN GROUP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

E-Mail: compliance@mbraun.de

„SpeakUp“

007984424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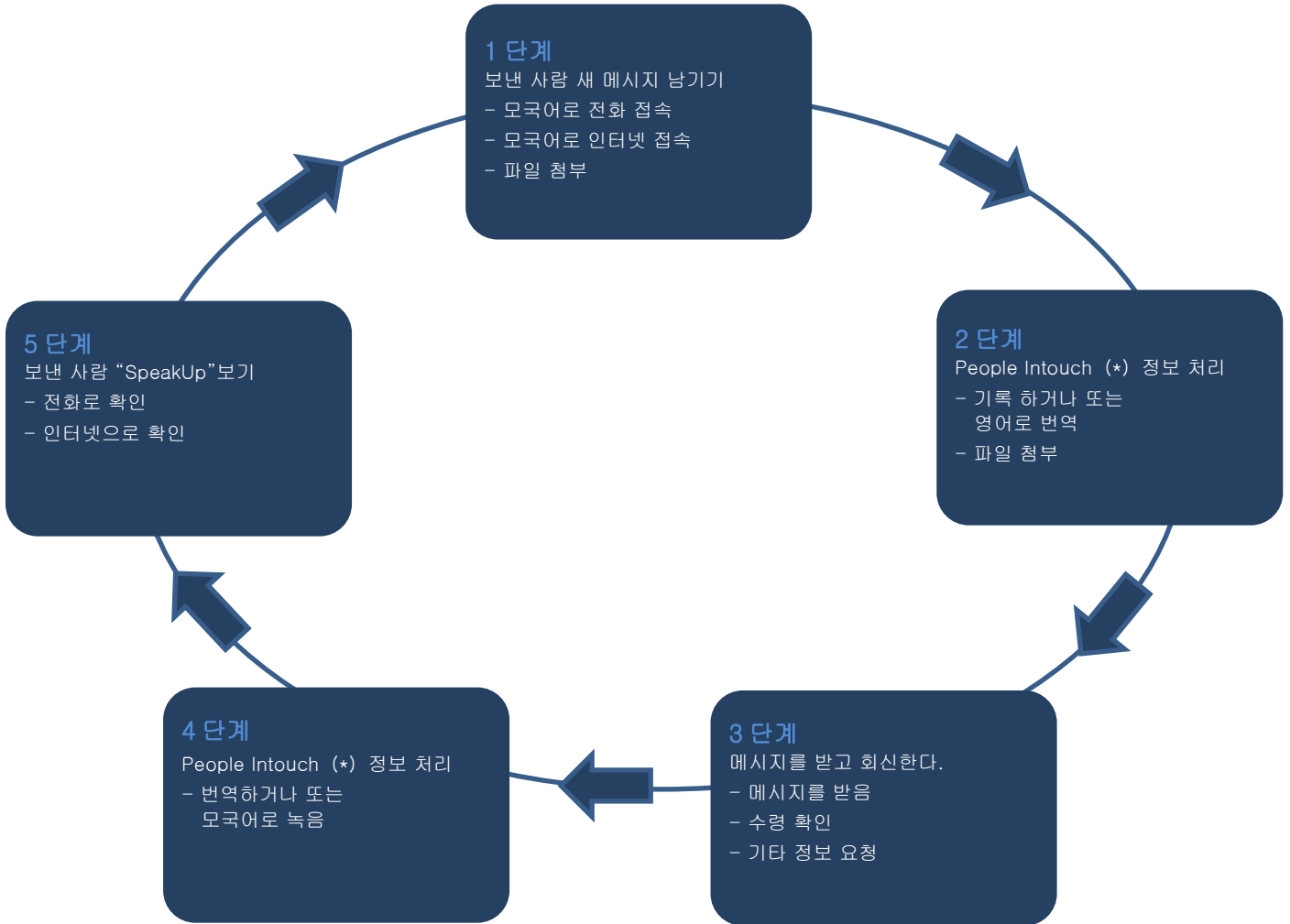
<https://www.speakupfeedback.eu/web/braun/kr>

Access code: 75193

INDUS Holding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원

compliance@indus.de

12 통보 프로세스 안내도



(*) People Intouch 는 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제공업체임.